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운영규칙

1998. 1. 1. 제정
2011. 3. 9. 1차 개정
2014. 5. 13. 2차 개정
2018. 3. 28. 3차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와 시상인원)

①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의 부문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1. 원로부문
2. 중진부문
3. 젊은박물관인부문

②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기준)

수상자의 자격은 우리 협회 회원과 박물관 종사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8.3.28.>

1. 수상자격

① 박물관 설립·운영자
② 박물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③ 박물관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상기 ①~③ 중 한 분야 이상을 통해 박물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부문별 자격

[상기 1. 수상자격을 충족한 각 부문별 자격]

ㅇ 원로부문 : 65세 이상, 작고자 포함

ㅇ 중진부문 : 50세~65세 미만

ㅇ 젊은부문 : 50세 미만

제4조(수상후보자의 공모)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한다.

1. 우리 협회 전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매년 시상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
2. 자기 추천은 할 수 없다.

제5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유사한 상을 수상한 자는 일정 연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① 응모신청 또는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사진부착) 1부
4.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상기 1~4항의 '아래 흔글 파일'

② 접수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추천위원회 구성)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등 설립주체별 대표 및 각 직능단체별 대표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추천위원의 운영)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으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추천위원회는 상의 권위와 수상자격에 맞는 후보자를 위원장에게 추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피추천인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9조(추천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추천위원 2/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3.28.>

제11조(심사위원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수상자 승인)
회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보고 받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15조(시상)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5월 개최되는 '전국박물관인대회'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시상상품)
"자랑스런 박물관인상"에 대한 시상상품은 다음으로 한다.
1. 상장
2. 메달
3. 기타

제17조(대리수상)
수상대상자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명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규정개정)
이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개정 2018.3.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확인)
심사위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수당 및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세부기준)

후보자의 심사기준과 세부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8.3.28.>